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14. 10. 31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“산업통상부장관” 을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 으로 함(안 제9조제4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4호 중 “산업통상부장관” 을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판단기준의 설정·관리) 법 제 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“<u>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</u>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<u>저공해 자동차</u> 2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<u>순환골재</u> 3.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<u>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</u> 4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5조에 따른 <u>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</u> 	<p>제9조(판단기준의 설정·관리) ----- ----- <u>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- <u>저공해자동차</u> 2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<u>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</u> 3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<u>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</u> 4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5조에 따라 <u>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</u> 	<p>제9조(판단기준의 설정·관리) (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 3. (개정안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----- -----